

# 인천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2024학년도 초등 사사프로젝트과정 진급희망원 제출 및 교육비 납부 안내

인천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에서는 2023학년도 초등 심화과정 수료자를 대상으로 2024학년도 초등사사프로젝트과정 진급 심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2024학년도에 초등사사프로젝트과정으로의 진급을 희망하는 학생, 학부모님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기간 내에 진급희망원 제출 및 교육비 납부를 부탁드립니다.

## 1. 제출 자격

- 본 교육원 2023학년도 초등 심화과정 수료예정자

## 2. 일정

구 분	일 시	비 고
진급희망원 및 개인정보수집동의서 제출	<u>2024년 1월 15일(월) ~ 1월 17일(수) 14시까지</u>	※ 학생과 보호자 모두의 <u>자필서명이 포함되어야 함.</u> ※ 희망원 제출자에 한해 진급심사 진행
진급자 발표	2024년 1월 18일(목) 17시~	영재원 홈페이지 > 공지사항에서 확인
교육비 납부	2024년 1월 19일(금) 11시~ 1월 23일(화) 17시까지	※ 자세한 사항은 '교육비 납부' 관련 안내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3. 진급희망원 서류 제출

- 제출 방법: 희망원 작성(학생, 보호자 모두 하단의 서명란에 도장 또는 서명을 해야만 유효함) 후 스캔(또는 사진촬영)한 이미지 파일을 이메일로 발송  
※ 희망원 양식은 [붙임1] 참고
- 제출 메일 주소: [isep20@inu.ac.kr](mailto:isep20@inu.ac.kr)

## 4. 진급 선정 방법 안내

- 2023학년도 초등 심화과정을 수료하여야 합니다.
- 2023학년도 초등 심화과정에서의 출석상황과 수업 태도를 검토하여 진급을 확정합니다.  
※ 2024학년도 교육과정에 성실히 임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님께서 상의 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초등사사프로젝트과정은 겨울학기에는 교육이 없으나, 여름학기에는 정규교육의 일환인 집중교육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 5. 교육비 납부 안내

- 납부기간: 2024. 1. 19(금) 11:00 ~ 1. 23(화) 17:00
- 납부대상자: 인천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2024학년도 초등사사프로젝트 진급자
- 납부 방법 : KG 이니시스를 통해 납부 (신용카드, 가상계좌, 실시간 계좌이체)
- 연간교육비: 300,000원
- 인천대 과학영재교육원에 **형제, 자매가 같이 다니는 경우 교육비 일부 면제**
- 증빙서류 제출 (**증빙서류를 기한내 제출하지 않으면 교육비 100%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 ~1월 22일(월) 우편 소인까지 '주민등록등본'에 해당 학생 이름에 형광펜 칠해서 제출
  - \* 주소: (21999) 인천 연수구 갯벌로12, 미추홀타워 별관 B동 6층 601호 과학영재교육원 초등담당자앞
- 초·중등 통합으로 산정하며 자녀1의 경우 100% 납부, 자녀2의 경우 50% 면제등으로 납부 진행
  - 1) 신입생 자녀와 재학생 자녀일 경우
    - 2명의 자녀가 신입생, 재학생인 경우  
재학생(또는 신입생) 30만원(100% 납부), 재학생(또는 신입생) 15만원(50% 면제) 납부
    - 3명의 자녀가 다니는 경우,  
재학생(또는 신입생) 30만원(100%), 재학생(또는 신입생) 15만원(50% 면제), 재학생 15만원(50% 면제)
  - 2) 재학생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 자녀1 30만원(100% 납부), 자녀2 15만원(50% 면제)
    - 자녀1 30만원(100% 납부), 자녀2 15만원(50% 면제), 자녀3 15만원(50% 면제)
- 사회통합대상자로 입학한 경우 교육비 전액 면제이며, 교육비 납부를 누르면 '교육비 납부를 완료하였습니다.'라고 뜹니다.

※ 입학할 때는 아니었지만, 현재 사회통합대상자의 범위(붙임3 참고)에 포함이 된다면 하단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서류를 제출하시면 교육비를 면제하여 드립니다.

### <사회통합대상자 서류 제출 안내-재학생 대상>

- 증빙서류 제출 (**증빙서류를 기한내 제출하지 않으면 교육비 100%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 제출서류: 사회통합대상자 확인서(붙임2), 해당 자격에 대한 증빙서류(붙임3 범위 참고)
  - \* 기한: ~1월 22일(월) 우편 소인까지
  - \* 주소: (21999) 인천 연수구 갯벌로12, 미추홀타워 별관 B동 6층 601호 과학영재교육원 초등담당자앞
- ※ 입학할 때 사회통합대상자로 입학한 학생은 서류를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교육비 납부에 대한 상세 안내는 납부기한 내 제공하는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6. 문의처 : 032-835-4971(초등 담당자)

## 2024학년도 초등 사사프로젝트과정 진급 희망원 및 개인정보수집동의서

학생이름	심화 반명
------	-------

### 1. 개인 정보 수집.이용 목적

수집한 진급희망자의 개인정보는 인천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학생생활기록부 작성, 관리, 과학영재교육원 홈페이지 등록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운영하는 국가영재정보 DB 구축 등의 영재 관리 업무를 위한 정보로 이용됩니다.

### 2. 개인 정보 수집항목

학생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진급희망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증명사진, 주소, 연락처, 학력, 그 보호자의 성명, 연락처, 생년월일 등입니다.  
※ 학생의 주민등록번호는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40조1항에 의해 수집합니다.

### 3. 개인 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학생관리 업무를 계속하는 동안 보유.이용할 수 있으며, 수료 후 본인의 삭제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모두 삭제됩니다. 삭제된 경우 추후 학생에 대한 학적 내용은 발급이 불가능 합니다.

### 4.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 거부

진급희망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학적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므로 진급을 할 수 없습니다.

본인은 2024학년도 초등 사사프로젝트과정 진급을 희망하며 인천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학적관리를 위하여 위의 내용에 관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24년 1월 일

학생 성명 : \_\_\_\_\_ (인 또는 서명)

보호자 성명 : \_\_\_\_\_ (인 또는 서명)

(※ 본 양식서는 자필 작성 및 서명이 포함되어야만 유효합니다.)

인천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장 귀하

**인천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사 회 통 합 대 상 자 확 인 서**

학생이름		심화 반명	
학생	성명	보호자	성명
	생년월일	생년월일	
주소			
재학학교	( ) 초등학교 ( )학년 재학		
대상자 유형	기회균등 대상자 <input type="checkbox"/> / 사회다양성 대상자 <input type="checkbox"/>		

본인은 사회통합대상자 자격에 적합하여 서류를 제출함을 확인하며, 만약 자격 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해당 자격이 없음에도 증빙서류를 위조·변조·누락하는 등 부정확한 방법으로 제출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원받은 교육비 전액을 납부하여야 함을 주지하고 이를 확인합니다.

2024년 1월 일

지원자 성명 : \_\_\_\_\_ (서명)

보호자 성명 : \_\_\_\_\_ (서명)

(※ 본 양식서는 자필 작성 및 서명이 포함되어야만 유효합니다.)

**인 천 대 학 교 과 학 영 재 교 육 원 장 귀 하**

### 1. 사회통합대상자 지원 자격

구분	지원 자격(입학원서 접수일 기준)
기회균등대상자	<p>&lt; 법령에서 정한 자 &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li> <li>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li> <li>3)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                      ②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li> <li>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행복복지센터에 등록된 가구의 학생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차상위 복지급여 수혜자 또는 그 자녀                              - 차상위자활급여, 차상위본인경감, 차상위장애수당, 차상위장애연금</li> <li>② 차상위 복지급여를 받고 있지는 않으나                              「차상위계층 확인증명서」를 받은 사람 또는 그 자녀</li> </ol> </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자녀(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에 따른 교육급여수급자</li> <li>2)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의 자녀(차차상위계층)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에 따른 교육비지원자</li> </ol>
<p><b>사회 다양성 대상자</b></p> <p>■ (공통조건)                      중위소득 160%의 가구원수에 따른 소득기준 이하 가정의 자녀만 지원 가능</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 및 14조 2에 따른 다문화가정의 자녀</li> <li>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 ~ 5호 따른 한부모가정의 자녀(한부모가족증명서 미발급자)</li> <li>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li> <li>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li> <li>5) 「아동복지법」 제3조 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아동</li> <li>6) 소년·소녀 가정의 학생, 조손가족의 자녀, 입양 자녀(입양된 자녀만 해당)</li> <li>7) 순직공무원(군인, 경찰, 교원, 소방, 교정 등)의 자녀</li> <li>8)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자녀</li> </ol>

※ 두 가지 이상의 조건에 해당될 경우 한 가지 조건의 증빙 서류만 제출할 것.  
 ※ 필요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2.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확인 증빙 서류

지원 자격		제출 서류(각 1부)	
기 회 균 등 대 상 자 제 출 서 류	<b>기회균등대상자 공통 제출 서류 (각 1부)</b>	· 사회통합대상자확인서 :본 교육원 소정 양식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가족관계증명서: 부 또는 모 기준 · 주민등록등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자녀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행정복지센터 발급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족 증명서(본인): 행정복지센터 발급	
	국가보 훈대상 자 자녀	교육지원대상자	· 교육지원대상자 확인서 또는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항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확인원: 소속학교 또는 관할 보훈지청
		교육지원대상자 외	· 국가유공자(국가보훈대상자) 증명서: 행정복지센터 발급(교육지원대상자가 아닌 자)
	법정 차상위 계층	자활대상자	· 자활급여 대상자 확인서: 행정복지센터 발급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의료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건강보험공단 발급
		장애수당대상자	· 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 행정복지센터 발급
		장애연금대상자 확인서 발급대상자	· 장애연금 대상자 확인서: 행정복지센터 발급 · 차상위계층 확인서: 행정복지센터 발급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차상위계층)인가구의 자녀	· 교육급여수급자 증명서 1부: 학교 발급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차상위계층)인가구의 자녀	· 교육비지원(급식비,정보화 지원포함) 확인서 1부: 학교 발급		
사 회 다 양 성 대 상 자 제 출 서 류	<b>사회다양성대상자 공통 제출 서류 (각 1부)</b>	<b>【중위소득 160%의 가구원수에 따른 소득기준 이하 가정의 자녀만 지원 가능: 참고1,2의 건강보험료 기준 및 가구원수 적용 매뉴얼에 따라 적용】</b> · 사회통합대상자확인서: 본 교육원 소정 양식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가족관계증명서: 부 또는 모 기준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증 사본(최근 2년 이내 발급 본) 또는 건강보험자격 확인서: 부양자 전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부,모, 소득있는 형제.자매 모두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 (부,모, 소득있는 형제.자매 모두): <b>최근6개월</b> (2023.08.~2024.01.)간 고지 금액이 표시된 것	
	다문화가정의 자녀	· 국적취득 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이혼가정 등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자녀기준))	
	한부모가정의 자녀	· 혼인관계증명서(이혼사항 또는 사망사항 기재) 1부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1부	
	특수교육대상자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통지서(교육청) 1부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아동	· 복지시설재원증명서 1부	
	소년·소녀 가정의 학생,조손가족의 자녀	· 사실관계확인서 1부: 행정복지센터 복지사 확인	
	입양된 자녀	· 입양관계증명 1부	
	순직공무원의 자녀	· 순직확인서 1부	
	장애인의 자녀	· 장애인 등록증 사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부	

※ 증빙서류는 서류 제출일로부터 2주 이내 발급한 서류에 한함(별도의 유효기간이 설정된 서류는 제외)  
 ※ 필요시 추가 서류 요구 가능

**【참고 1】 중위소득 160% 관련 건강보험료 적용 기준표**

(기준 중위소득 160%,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단위: 원)

가구원수	소득기준(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5,530,000	197,299	157,523	200,343
3인	7,096,000	255,791	229,312	261,015
4인	8,642,000	309,670	293,801	320,126
5인	10,130,000	359,887	354,030	379,133
6인	11,565,000	434,962	436,179	476,875
7인	12,973,000	476,875	481,248	521,613
8인	14,380,000	521,613	527,523	563,270
9인	15,787,000	563,270	570,140	625,329
10인	17,194,000	625,329	628,210	729,187

※ (출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91호(시행 2023.1.1.)

## 【참고 2】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원수 적용 매뉴얼

### 【가구원 수 산정 범위】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해당 학생과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직계 존속(부·모), 2촌 이내의 형제·자매
- 가족관계증명서 상 부·모 또는 미혼인 형제·자매는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
- 부·모가 모두 없는 경우, 생계·주거를 같이 하는 조부·조모 또는 외조부·외조모를 가구원에 포함

### 【건강보험료 확인 시 유의사항】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에 부·모 중 1명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반드시 제출)
- 부모가 모두 있는데 건강보험증 사본에 학생만 있거나 부·모 중 한명만 있는 경우 반드시 다른 한 명의 건강보험료 금액을 확인하여 부모의 건강보험료 합산
- 지원자가 직장에 다니는 형제자매의 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 부모의 납부실적까지 제출
- 이혼 가정의 경우 학생을 부양(친권자)하는 부 또는 모의 납부실적만 반영함

### 【산정·적용 사례】

- (산정) 건강보험증에 부양자로 등록된 부·모의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을 합산한 금액(단,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
  - ※ 부·모 중 한 쪽이 피부양자인 경우 피부양자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하지 않도록 주의
- (적용) 부·모가 각각 다른 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 부와 모의 건강보험료를 합산 적용
  - 부·모가 각각 지역건강보험 부양자인 경우: 합산 후 지역보험료 기준 적용
  - 부·모가 각각 다른 직장보험 부양자인 경우: 합산 후 직장보험료 기준 적용
  - 부·모가 각각 지역보험과 직장보험 부양자인 경우: 합산 후 혼합보험료 기준 적용
- 적용 사례
  - ① 아버지는 직장건강보험 부양자로 3만원 납부하고, 어머니는 지역건강보험 부양자로 2만 2천원 납부하는 4인 가구의 경우  
: 3만원(부) + 2만2천원(모) ⇒ 가구 건강보험료(5만2천원) ⇒ 혼합기준 적용
  - ② 조모, 아버지(자영업), 어머니(가정주부), 지원자, 남동생(중학생)인 경우  
: 가구원 수 4인, 수입 가구원수 1인 ⇒ 아버지 건강보험료만 반영 ⇒ 지역기준 적용
  - ③ 조부, 아버지(자영업), 어머니(교사), 지원자, 누나(대학생), 여동생(중학생)  
: 가구원 수 5인, 수입 가구원수 2인 ⇒ 아버지, 어머니 건강보험료 합산 반영 ⇒ 혼합기준 적용
  - ④ 아버지(자영업, 이혼), 어머니(자영업, 친권자), 지원자, 여동생(중학생), 형(미혼 직장인)  
: 가구원 수 4인, 수입 가구원 수 2인 ⇒ 어머니와 형 건강보험료 합산 반영 ⇒ 혼합기준 적용
  - ⑤ 아버지(자영업, 이혼), 어머니(자영업, 친권자), 지원자, 여동생(중학생), 형(기혼 직장인)  
: 가구원 수 3인, 수입 가구원 수 1인 ⇒ 어머니 건강보험료만 반영. 단, 형은 혼인관계증명서 사본을 제출해야 함 ⇒ 지역기준 적용